

태국 여행자 통관정보

2023. 8월말 기준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류 1리터 이하 1병 	
담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담배 200개피 이하, 엽연초의 경우에는 250g이하 	
향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별도 규정 없음 	
면세한도금액 (일반면세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합리적인 수량 이내의 개인물품으로 20,000바트(약 75만원)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※ 면세적용을 위한 기본조건은 개인 또는 직업상 용품으로서, 수량이 합리적인 범위이고, 금지 또는 제한품목이 아니어야 함 	
외국환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화 20,000불 상당 이상의 외화를 태국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• 50,000 바트를 초과한 금액을 태국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세관 신고와 별도로 태국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때 개인은 태국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바트화 반출신청을 하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반출허가서를 발급(30일 이내) - 출국자는 출국시 세관에 현금 반출허가서를 제시하고 세관에 신고 ※ 인접국(라오스, 미얀마,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) 및 베트남, 중국 운남성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2,000,000바트까지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휴대 반출 가능하며, 450,000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함 	
의약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소비 목적의 의약품은 30일치 이내에서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없이 반입 가능(처방전 소지 필요) • 화장품은 품목별로 2개 이하, 총 10개까지 요건 구비 면제 	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식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소비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태국법에서 정하는 금지식품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며 법에서 정하는 반입량 이내인 경우 수입요건 구비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낵, 간식/음료(비주류)/육류·육가공제품/채소·과일 가공제품 : 각각 1 kg 이하 • 이때에도 요건 구비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검역, 물품 가액이 20,000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 및 관세납부 필요 	
반입불허품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반출입 금지 물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약류 - 풍속저해 물품/서적/그림, 음란물 - 태국국기 및 국기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 - 위조 화폐/채권/동전 - 저작권 침해물품(예:음악테이프, CD, DVD, 컴퓨터 SW 등) - 보호동물 또는 CITES 등재 야생동물 • 반출입 제한 물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약품, 식품 및 보조제품, 화장품 - 불상/골동품/미술품 등 예술품 - 총포/무기/폭발물 등 - 살아 있는 동물 또는 그 사체 - 식물과 그 부분 - 기타 상무부장관 등이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품목 (예: 통신장비 및 워키토키, 자동차 및 부품, 전기톱 및 부품, LPG, 펌프 디젤유, 폐 플라스틱, 유기화합물, 칼라복사기, 음각 인쇄기, 금속동전, 대리석, 농산물(마늘, 대두 등)) 	
휴대품 예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태국에 단기간 체류 후 제3국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해당물품을 태국에 반입할 목적이 없는 경우 예치 제도를 활용하여 세관에 물품을 보관하고 출국시 반환받을 수 있음 • 예치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국 출국 항공권 제시 	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정물품으로 의심되거나 세관통관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것 - 금지나 반입제한 품목이 아닐 것 • 예치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예치수수료는 아래와 같음 - 보관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Kg 이하(40 THB/package/day), 20Kg ~40Kg(80 THB/package/day), 40Kg 이상(150 THB/package/day) - 보관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: 위의 보관료의 2배 * 물품 예치일 및 반환일도 1일로 계산 • 여행자는 반드시 레드채널에서 휴대물품 예치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때 세관은 여행자에게 보관증을 교부 • 예치물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여행자는 항공권 수속시 항공사 직원에 예치증을 제시하고 보관료 등을 납부한 뒤 물품 수령 가능 	
기타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원칙적으로 자가사용 물품에 한정되며 선물용 물품은 면세대상이 아님 • 여행자는 입국시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레드채널(Things to Declare)로 이동하여 신고하여야 하며, 과세대상 물품이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면세 여부 및 신고여부가 확실치 않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는 레드채널로 이동하여 세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함 • 만약 과세,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휴대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관구역(그린 채널)을 통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, 세금을 포함한 당해물품 가액의 4배 이내의 벌금(10년 이하의 징역 가능)과 별도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동 물품은 압수됨 - 원칙적으로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밀수죄를 적용하고 있으며,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	

휴대품	통관기준	비고
	<p>물품가액의 1배, 은닉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~4배의 벌금을 부과함</p> <p>* 담배의 경우에는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한 담배를 세관에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후 소비세청 직원에게 적발되는 경우 소비세액(세율 40%)의 10~1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, 범칙물품은 압수되므로 대리운반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</p>	